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한 철 우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3년 4월 2일 장병학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의 문화예술교육과 체험을 확대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문화예술교육 지원 목적, 기본원칙과 그 시행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
-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 문화예술교육 지원 협의회 설치·구성·임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로부터 제9조)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기반구축, 교육의 지원, 단체 지원,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14조)

4. 검토의견

금번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문화예술교육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과 문화예술교육 지원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2012년에 개정되어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기반구축, 교육의 지원, 단체 지원,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을 정함.

본 조례는 도민의 문화예술교육과 체험을 확대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상위법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 타시도 사례: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붙임 :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안 1부. 끝.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의 문화예술교육과 체험을 확대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도의 문화예술환경의 변화를 유도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지향한다.
2. 주민의 문화예술교육 기회확대와 문화 향수권의 증대를 도모한다.
3. 지역의 문화기반시설과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연계를 도모한다.
4. 문화예술교육의 안정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양성·배치와 재교육을 시행한다.
5.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제3조(충청북도의 임무)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준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①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가 협의·조정할 사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법 제9조에 따른 협의회에는 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문화예술 관련 국장과 충청북도의회 소속 의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의 간사는 문화예술교육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협의회의 위원 임기)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할 때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①도지사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문화예술교육사 양성) ①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재교육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안정적인 역할을 위하여 인력채용의 기회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①도지사는 도내 각종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 공공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공공문화기반시설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이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16조의 대상 시설 및 단체에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 및 감독) ①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경비가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

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지역센터 등 관계기관은 도지사가 자료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기간 내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지원센터 운영 및 센터 업무 관련 사업 비용 (안 제10조)
-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지원 비용(안 제11조)
- 문화예술교육 실시 공공문화기반시설 지원(안 제12조)
-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따른 비용(안 제12조)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단체 지원 비용(안 제13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12년, '13년도 당초예산 국가 및 지자체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토대로 비용 추계
- 물가 변동과 인상요인을 배제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2	'13	'14	'15	'16	총계
계	3,797,399	4,417,399	4,217,399	4,217,399	4,217,399	20,866,995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1,278,613	1,278,613	1,278,613	1,278,613	1,278,613	6,393,065
사회문화예술교 육사업	528,000	728,000	528,000	528,000	528,000	2,840,000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예술강사지원사업	1,420,786	1,420,786	1,420,786	1,420,786	1,420,786	7,103,930
토요문화학교	220,000	440,000	440,000	440,000	440,000	1,980,000
문화예술플랫폼사 업	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050,000

4. 부대의견

- 문화예술교육사 양성(안 제11조),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안 제12조),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안 제12조), 단체지원(안 제13조)와 관련 추가적인 재정 수반이 가능성이 있으나, 세부적인 추정이나 산출에 어려움

5. 작성자

- 충청북도 문화예술과 행정7급 김정선(220-3824)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13년도 예산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총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금 (교육재정)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1,278,613	284,110	284,110		710,393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728,000	364,000	109,200	254,800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300,000	150,000	150,000		
예술강사지원사업	1,420,786	710,393			710,393
토요문화학교	440,000	440,000			
문화예술플랫폼사업	250,000		250,000		
합계	4,417,399	1,948,503	793,310	254,800	1,420,786

관 계 법 령 발 체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4.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5.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6.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평가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8. 문화예술교육 연구의 지원
9.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10.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①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역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협의회 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지역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로서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시·도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

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2.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3.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4. 교원의 연수지원
5.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8.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⑦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⑧진흥원 및 지역센터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지역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3조(위원의 임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지역협의회회의 회의) ①지역협의회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지역협의회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지역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지역협의회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전문위원) ①지역협의회에 상정할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지역협의회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간사) 지역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역협의회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수당 등) 지역협의회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을 것
2.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가 상근할 것

②지역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센터의 운영계획서
2. 최근 2년간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을 기재한 서류
3.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
4. 상근 문화예술교육사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센터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센터의 명칭
2. 지역센터의 대표자
3. 지역센터의 소재지